만수미당

정보공개서

(제공일:)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0080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0.07.02] doomlee@hanmail.net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7.26]

[만수미당]

정보공개서

[㈜새모양에프앤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새모양에프앤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 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거리길 49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63 - 242 - 060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63 - 245 - 060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63 - 242 - 0604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 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만수미당 외 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거리길 49				
㈜새모양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에프앤비	2014. 09). 19	2014.09.22	이 전 무	06	3-242-0604	063-245-0604
	법인등록번호 210111		1-0100603	사업자등록번호 418-8		81-5101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	상호	주 소		
		㈜새모양 에프앤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거리길 49		거리길 49
대표이사 (임원)	이전무	사용 브랜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만수미당 외 2	이전무	063-242-0604	063-245-0604

관계	이름	상호	주 소		
사용인		㈜새모양 에프앤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거리길 49		거리길 49
(임원)	김재광	사용 브랜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만수미당 외 2	이전무	063-242-0604	063-245-060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해당 없음				
브랜드를 인수함	예정 없금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해당 없음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II O IX II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해당 없음				
일부를 인도함	川 6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해당 없음				
합병함	M O 財力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만수미당입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①	만수미당	
상 호 ^②	만수미당 OO점	
상표(서비스표) ³		
광 고 ^④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3,597,062	2,565,155	1,031,906	5,835,795	177,562	155,631
2022년	3,654,656	2,437,007	1,217,648	7,615,082	233,736	185,741
2023년	3,763,551	2,341,257	1,422,294	9,799,539	644,921	542,961

-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 TJ AJ H	A) =	코 기 (i)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이전무	대표이사	2014.09.19.~현재	(주)새모양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관련임원	김재광	이사	2014. 09. 19~현재	이사	가맹사업 외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심	상근	비상근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_	25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당해 브랜드 포함)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2014. 09. 19.~현재	얌스(등록번호: 20100400017)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업 경영
			2015.01.05~2021.03.31.	아인방(등록번호20150832) 라는 영업표지의 뷔페업을 경영 했으나 자진취소
가맹본부	(쥐새모양에 - 프앤비	게 가맹사업 경영	2018.11.19~2024.03.31	봄초밥여름소바(등록번호 20190508)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업 경영 했으나 자진취소
	E //		2019. 04. 05~현재	만수미당(등록번호 20200809)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업 경영
			2020. 03. 02~현재	달빛에구운고등어(등록번호 20200808)라는 영업표지의 생선구이업 경영
			2021.09.21~2024.03.31	이태리떡볶이(등록번호2021 2310)라는 영업표지의 떡볶이업 경영 했으나 자진취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②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만수미당	상표 사용권	2020.02.19. 출원 등록	40-2020-0027398	(주)새모양 에프앤비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현재 만수미당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아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 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만수미당] 가맹사업 현황

1. [만수미당]을 시작한 날: 2021. 02

2. [만수미당]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새모양	만수미당	이전무	2019. 03. 01.~현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거리길 49
에프앤비	친구미경	역신구 	ZU19, U3, U1.~ 연재 	선국 선무의 탁선부 사기되실 49

3. [만수미당]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만수미당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전투비경 	한식	갈비탕, 육전냉면, 아구갈비찜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만수미당]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		2022.12.31			2023.12.31	
/\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1	1	1	_	1	2	_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2	1	1	1	_	1	2	_	2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만수미당]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1	0	0	0	1
2022	1	0	1	0	0	0
2023	0	0	0	0	0	0

6. [만수미당]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만수미당]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 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해 브랜드 포함)

(단위: 개)

7.日	사물/하루	어어고기	정보공개서	업종	가밍	점/직영점의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H S	2021.12.31	2022.12.31	2023.12.31
기메버버	(주)새모양	ዕት ኤ	20100400017	분식	27 / 0	26 / 0	97 / 0
가맹본부	에프앤비	얌스	20100400017	七勺	27 / 0	26 / 0	27 / 0
가맹본부	(주)새모양	봄초밥	20190508	초밥	2 / 1	2 / 1	0 / 1
/ 명근무	에프앤비	여름소바	20190308	Y Y	2/1	2/1	0 / 1
가맹본부	(주)새모양	만수미당	20200809	갈비탕	1 / 1	0 / 1	0 / 2
기정근무	에프앤비	인구의 3 	20200009	で P	1 / 1	0 / 1	0 / 2
가맹본부	(주)새모양	달빛에 구운	20200808	생선구이	6 / 1	9 / 1	13 / 2
/ 경문구	에프앤비	고등어	20200000	인 전기	0 / 1	9 / 1	13 / 4
가맹본부	(주)새모양	이태리	20212301	떡볶이		_	_
/「でモヤ	에프앤비	떡볶이	20212301	ㅋㅠ이	_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 과 그 산정기준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_
지역 ^④ 2023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_	해당없음						
서울	-	해당없음						
부산	_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_	해당없음			
광주	_	해당없음			
대전	_	해당없음			
울산	_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_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_	해당없음			
전북	_	해당없음			
전남	_	해당없음			
경북	_	해당없음			
경남	_	해당없음			
제주	_	해당없음			

8. [만수미당]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해당 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전주종합금융센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5	063-283-78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예치기관인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후 3일 내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전국 국민은행 어디에서나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귀하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인근 국민은행에 가맹금과 함께 제출합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제출된 가맹금 예치신청서 확인·접수 후 가맹금을 가맹본부와 계약 국민은행이 개설한 가맹금 예치 모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합니다.

귀하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가맹금 예치증서(원본)를 교부 받아 보관합니다.

당사와 가맹금 예치계약 국민은행에서는 귀하의 가맹금 예치 후 가맹금 예치증서(부본)를 첨부하여 가맹본부에 가맹 사업자의 가맹금 예치사실(예치일로부터 7일 이내)을 통보 합니다.

귀하는 또한 당사의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현재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만수미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

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구분 지급 대상		비고
최초 가맹금 및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해당 사항 참고				
가입비	11,000	계약체결 후 계약당일 이내	매장 공사 시작 전 까지	가 맹 점 모 집 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교육비	5,500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교육이 시작되기 전 본사 협의 후	영업 필수 노하 우 전수	교육 시작 후 반환 불가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③	비고
총계	[10,000]		해당 사항 참고	
계약이행보증금	10,000	계약체결 후 계약당일 내	물품대금 미납	증권으로 대체 가능 단, 증권은 30,000천원 의 금액으로 발급하여 야 함.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단위: 천원)
합계	26,500 / 46,500(증권으로 대체 시)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10,000
계약이행보증금(증권으로 대체 시)	30,000(증권금액)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²	금액 ^③	면적3.3 m'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ਖ] ਹਾ ^④
총계	하단 참조	260,700	4,345	=	_	60평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132,000	2,200	내부 공사 시공 전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비 (외부 사인물)	(협력업체)	15,400	_	내부 공사 시공 전	공사 전 계약취소	전면 8m기준 추가비용추가
주방, 홀 집기 일체	(협력업체)	82,500	1,375	내부 공사 시공 전	공사 전 계약취소	
의,탁자	(협력업체)	13,200	_	내부 공사 시공 전	공사 전 계약취소	20조 기준
오픈판촉물 광고	(협력업체)	6,600	_	내부 공사 시공 전	공사 전 계약취소	-
초기 물품비	(협력업체)	11,000	_	물품수령 즉시	물품 반품시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
냉난방비	(협력업체)	_	_	-	_	점주님 직접계약 (본사위임가능)
전기증설	별도계약	_	_	_	_	점주님 직접계약 (본사위임가능)
정수기.커피	별도계약	_	_	-	-	점주님 직접계약 (본사위임가능)
CCTV, 음향	(협력업체)	_	_	-	_	점주님 직접계약 (본사위임가능)
포스	(협력업체)	_	_	-	_	점주님 직접계약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 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220천원(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①	선정 기준 ^②
당사 점포개발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최적의 입지 도출→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①	계약·채용 기준 ^②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신체건강 및 매뉴얼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분
종업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신체건강 및 매뉴얼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분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만수미당]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천원)	287,200	총액의 10%	70%	10%	10%
납부일	가맹금이 포함된 창업비용 총 합 (추가 공사 별도)	계약일	계약일+5일	계약일+20일	주방집기입고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 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ュ⊕
상표사용료	(협력업체)	월 55만원 또는 카드매출1%	익월 5일		상표사용료 영업지역보장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협력업체)	대중매체 광고의 50%를 가맹점별 1/n	광고 진행시 별도 협의	광고 미진행시	광고 진행시	별도 협의
판촉분담금	해당없	, , , 기맹점별	직접 진행- 본	-사 분담금	· 없음)	
교육훈련비	(협력업체)	330(1일)	교육 실시 5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⑤	(협력업체)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필요시 비고 참조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필요시 비고 참조				36p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본사 지정업체	포스 업체규정에 따름	다음 월 5일	포스 수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연이자 [®]	(협력업체) 에프앤비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 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필요시	문의: 가맹관리팀 (1688-8991)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필요시	문의: 가맹관리팀 (1688-8991)
세무처리	성실한 법규 준수와 공정한 세무관리	필요시	문의: 가맹관리팀 (1688-8991)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협의]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진행에 따른 비용	점주 요청시
점포 이전비 ^⑤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	점포 이전 진행 에 따른 비용	점포이전 합의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 와의 계약승계 여부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만수미당]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새모양에프앤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 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 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일 500천원)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만수미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 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만수미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만수미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만수미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 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④
만수탕			
갈비탕			
전복갈비탕			
매운갈비국밥			
설렁탕			
제주식해장국			
전복돌솥밥			
한우육회비빔밥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육전물냉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육전비빔냉면	단, 지역적 특성을	2회 위반: 2회 이상	
반반육전냉면	고려하려 본사와 협의	서면 시정요구	
소고기육전	- - - 하에 이외의 메뉴 판매 및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바싹불고기	가격 조절 가능		
아구갈비찜	기계 도일 기 6 -		
전복갈비전골			
한우육회			
교자만두			
메일전병			
공기밥			
맥주,소주			
음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 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①	상품 · 용역명 ^②	제한내용 및 조건 ^③	위반시 책임 ^④	비교 ^⑤
19세 미만 고객	주류	· 거래상대방별로	1회 위반: 구두 경고	
경쟁업체	당사에서 판매하는 원,부재료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③
		7110706	-14
만수탕	14,500		
갈비탕	14,500		
전복갈비탕	20,000		
매운갈비국밥	13,500		
설렁탕	10,000		
제주식해장국	10,000		
전복돌솥밥	13,500		
한우육회비빔밥	11,500		
육전물냉면	10,000		
육전비빔냉면	10,000		
반반육전냉면	13,000		
소고기육전	7,500		
바싹불고기	18,000		
아구갈비찜	38,000		
전복갈비전골	42,000		
한우육회	10,000		
교자만두	6,000		
메일전병	5,000		
공기밥	1,000		
맥주,소주	5,000		
음료	2,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혐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2		
등 등 한 집중 합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갈비탕, 육전냉면, 아구갈비찜, 전복갈비전골을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만수미당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①	설정방법 ^②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5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계약서상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	즉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영업지역 재조 ① 재건축, 재개발, 전대규모개발로 연급격한 변동이 보 급격한 변동이 보 ② 해당 상권의 기호 유동인구가 현저히 ③ 소비자의 기호 인하여 해당 상 수요가 현저히 ④ 위의 사유에 전 인하여 영업지 유지하는 것이 하다고 인정되는	신도시 건설 등 인하여 상권의 발생하는 경우 거주인구 또는 비변동되는 경우 도변화 등으로 품·용역에 대한 변동되는 경우 전하는 사유로 역을 그대로 현저히 불합리	재조정 절차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동의를 얻는 방법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만수미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만수미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만수미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조 1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 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40조 1항 각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0조 1항 각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40조 1항 각호
○ [만수식당]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 은 경우	40조 1항 각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0조 1항 각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을"이(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41조 1항 (31조 1항 참조)
○"을"이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41조 1항 (31조 1항 참조)
○"을"이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1조 1항 (31조 1항 참조))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41조 1항 (31조 1항 참조)
○"을"은 "갑"에게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41조 1항 (31조 1항 참조)
○"을"이 "갑"과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1조 1항 (31조 1항 참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41조 1항 (31조 1항 참조)
○"을"은 "갑"으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41조 1항 (31조 1항 참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전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u>
 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u>뚜렷이</u>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 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① 가맹점운영권을 다시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②	양도 절차 ^③	비교 ^④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이전 완료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 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	가능 여부(조건) ^②	이전 범위 ^③	절차 ^④	기타 의무사항 ^⑤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전) → 본부의 승인 (1개월 정도 소요)	교육비 발생 (550만원 부가세포함)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신청 → 본부의 승인 (1개월 정도 소요)	문의: 가맹관리팀 (1688-8991)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귀하가 [만수미당]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①	경업허가 절차 ^②	비고 ^③
○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 서 갈비탕, 냉면, 아구갈비찜, 전복갈비전골, 비빔밥을 판매하 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자 검토(시장조사 포함, 6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1899-840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만수미당]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A.M11:00 ~ P.M10:00	주 6일이상, 월 24일 이상 영업	문의: 가맹관리팀 (1688-899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②	대체 가능 인력 ³	비교④
5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매장 매출에 따라 변동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①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②	비고 ^③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0.5회/월		
친절도	담당자 매장 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0.5회/월	가맹관리팀 (1688-8991)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0.5회/월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 니다. 관리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만수미당]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광고	부담	비율	분담 절차 ^④	비고 ^⑤
一 下七。	성격 ^②	본사부담 ^③	가맹점부담	한참 설사	山工。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대중매체 광고의 50%를 가맹점별 1/n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TV,라디오 협찬 광고시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계약서상의 영업지역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 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당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합계		7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7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69~6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7~46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5	
가맹금 예치	- 시행 예정	D-44(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및 홍보물 제작	D-43~41(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0(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9~10(30일)	
주방집기입고	- 홀 주방 집기 일체 입고	D-9(1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8~2(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 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 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②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③	지급절차 ^④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ㅇ간판교체 비용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ㅇ점포환경개선일	
인테리어 등의	O인테라어 공사비용	이전을 수반하지	용 청구(공사계약	로부터 3년 이나에	

지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으로 안정되는 경우 비용을 제외한 : 20% ^{증빙할 수 있는 서} 없는 사유로 계약)
○위생이나 안전의 실내건축공사에 ○점포의 확장 또는 류첨뷔 → 90일 이 종료(계약의 해	()·
결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알레의 비용 이전을 수반하는 액을 가맹점시업자에 영업양도 포함되	
가맹시업의 통일성을 단. 가맹사업의 점포환경개선 게지급 경우 가맹본	
유지하기 어렵거나 통일성과 무관하게 : 40% (단, 가맹본부와 가 부담액 중 진	.
정상적인 영업에 가맹점사업자가 맹점사업자간 별도 기간에 비례히	·
의 한의가 있는 경우 1	
현저한 지장을 추가 공시를 실시 변위내에서 분할 부담액은 지급하	·
주는 경우 함에 따라 소요되는 교가능 아니하거나 이	·
비용은 제외) 이가맹점사업자가 가 지급한 경우에	트
맹본부 또는 가맹 환수 가능	
본부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포 환	
경개선을 한 경우	
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	
부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 ○ 가망전자의 기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위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 부 Floilel 2007 231 : 2	
담액의 30%, 3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금액 ^④	비고 ^⑤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 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초기투자 비용에 포함 조건	오픈 당일	비고 참조	초기투자 비용에 포함.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팀 (1 899-84 06)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팀 (1 899-8 406)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만수미당]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	신용제공자 ^②	금액 ³	신용 형태 ^④	신용제공 조건 ^⑤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신협	-	신용 대출	해당 은행 대출 조건에 따름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1688-8991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적자일 경우	협의	경영 컨설팅 등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만수미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①	기한	비고 ^②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실매장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_	필요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만수미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ſ	신규 교육	7일	5,500	최초 계약 이수
Ī	보수 교육	1일	330	필요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 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 및 실근무자는 실제 매장에서 실시하는 기초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픈 지연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전주	호성본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거리길 49
2	전주	박물관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29

[상기 직영점은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0개월	2개 매장 평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1,565,972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이며 6개 월 미만 영업 직영점은 산정 제외 하였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1688-899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ainbang.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 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첩 - 1)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손익계산서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2

1)만수미당 직영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만수미당 가맹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3

(매장 평수, 컨셉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 4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 5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